

의안번호	제2961호
의 결	2025. . . .
연 월 일	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##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발 의 자	정영환 의원 등 6인
발의연월일	2025. 6. 27.

#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(정영환 의원 발의)

발의연월일: 2025. 6. 27.

발 의 자: 정영환, 최두임, 김향숙,  
김원순, 우정욱, 이정숙의원(6인)

의안 번호	2961
----------	------

## 1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의 ‘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’ 마련 권고에 따라 회의 방청 절차를 개선하고 회의록 공개 시기를 명확화하여 지방 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제고 및 민주적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회의록 공개 시기 명확화(안 제48조제5항)
  - 회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(홈페이지) 게재
- 나. 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 규정 신설(안 제48조의2)
- 다. 방청 제한 시 사유와 근거 안내 규정 신설(안 제79조제4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5-33호
  - 예고기간: 2025. 6. 27.(금) ~ 7. 3. [6일간]
  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 없음

## 4. 본문: 붙임과 같음

##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2제1항 중 “홈페이지”를 “누리집(홈페이지)”으로 한다.

제46조제1항 중 “서명·날인한다”를 각각 “서명한다”로 한다.

제4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제45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록 작성을 완료하여 의회 누리집(홈페이지)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.

제3장제6절에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8조의2(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)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임시회의록을 의회 누리집(홈페이지)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.

제59조제3항 중 “서명·날인한다”를 “서명한다”로 한다.

제7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의장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9조의2(조례안 예고) ① 의장은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· 주요내용 · 전문(신 · 구문 대비표를 포함한다) ·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<u>홈페이지</u>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(이하 입법예고라 한다)할 수 있다.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	<p>제19조의2(조례안 예고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누리집(홈페이지)</u>----- -----.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6조(회의록의 서명과 보존) ① 회의록에는 의장 ·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·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의회사무과장이 <u>서명 · 날인한다</u>. 다만,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<u>서명 · 날인한다</u>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6조(회의록의 서명과 보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서명한다</u>. ----- ----- <u>서명한다</u>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8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① ~ ④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48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제45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록 작성을 완료하여 의회 누리집(홈페이지)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</u>.</p>

<신 설>

제59조(위원회 회의록) ①·②  
(생략)

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·날인한다.

제79조(방청의 제한) ① ~ ③ (생략)

<신 설>

제48조의2(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)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임시회의록을 의회 누리집(홈페이지)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.

제59조(위원회 회의록) ①·②  
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 
-- 서명한다.

제79조(방청의 제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의장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.

**□ 지방자치법**

제84조(회의록)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지방의회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
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, 주민에게 공개한다. 다만,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

**□ 지방자치법 시행령**

제56조(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) ① 지방의회는 회의 내용을 속기나 녹음으로 기록·보존해야 한다.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전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일부부터 5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.

④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